70. 돈 먹는 하마된 부실기업 채권단 ‘자율협약’-한계기업 연명 수단 전락…무용론 ‘솔솔’

STX조선해양이 3년 넘게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으면서 4조원대 자금 지원을 받고도 법정관리 수순에 들어간다. 그뿐 아니다. 2010년부터 나란히 구조조정에 들어간 성동·SPP·대선조선 등 중소 조선 3사에 대해서도 법정관리 가능성이 검토 중이다. 업계에선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결국 STX의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 업체들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자율협약’ 상태로 채권단의 관리 아래에 있다는 점이다. 채권은행들이 STX조선해양을 비롯한 중소 조선사 4곳에 쓴 돈만 9조원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물론 금융권에서 채권단 자율협약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KB금융지주 고위 관계자 A씨는 “경영 상황이나 업황을 봤을 때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돈을 지원해줌으로써 구조조정이 아닌 연명 수단으로 전락한 면이 없지 않다. 좀비기업을 키우고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동부제철과 DK아즈텍은 자율협약에서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에 들어간 바 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처음부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결정하는 게 더 바람직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2009년 자율협약에 돌입한 후 5년 만에 졸업한 아시아나항공 등 성공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자율협약’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 자율협약 어떻길래  
  
▶ 법적 근거 없어 책임성 모호   
  
전문가들이 먼저 지적하는 자율협약의 문제점은 바로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점이다(박스 기사 참조).   
  
법이 없다 보니 채권단의 자의적 판단이나 정부기관의 입김, 정치권 개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진단이다. 자율협약과 달리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법정관리는 ‘통합도산법’에 각각 근거한다. A씨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금융당국과 국책은행, 구조조정 대상 기업 경영진 등의 도덕적 해이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 역시 “채권은행과 채무기업 간의 협의로 결정되는 만큼 구조조정의 투명성, 책임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자 대주주여서 계산해야 할 내용이 많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이 흘러간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구조조정 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채권단과 기업, 금융당국만 끼리끼리 공유하는 경우가 다수다. 외부에선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지는 셈이다. 앞의 STX조선해양의 경우 3년간 4조5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20여차례에 걸쳐 지원해줬지만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깜깜이다.   
  
반면 기촉법은 주채권은행이 기업개선계획 상황을 매년 한 차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주주와 노조 역시 구조조정 이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소위 국책은행이 자율협약의 주채권은행인 경우가 대다수여서 관치금융과 정치금융에 대한 시비도 끊이지 않는다. 앞의 조선사 등 일부 기업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대신 자율협약으로 들어간 데는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실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에 퇴직 임원들을 낙하산 인사로 내려보내는 일 역시 다반사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지금의 기업 구조조정 체계는 정치권-금융당국-국책은행-관리대상 기업으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윗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날을 세웠다. 앞의 A씨는 “관치와 정치금융은 부실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고 금융사의 손실이나 국민들의 혈세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자율협약이 대기업 위주로 이뤄지는 구조조정 방식이라는 문제도 있다. 김상조 교수가 산업은행이 채권을 갖고 있는 99개 구조조정 기업을 분석한 결과,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기업은 각각 43.4%, 자율협약이 진행 중인 기업은 13.1%로 나타났다. 그런데 자율협약을 진행 중인 기업의 자산은 99개 구조조정 기업 총자산의 48.9%에 달했다. 자산 규모가 큰 대기업 상당수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율협약을 적용받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 대안은 없나   
  
▶ 상시 구조조정 강화해야   
  
물론 자율협약의 장점도 없지는 않다. 조선이나 해운 사업 같은 경우, 법적 근거가 있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수주나 영업활동에 치명상을 입는다. 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선주들이 발주를 취소하고 선수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기업들은 물론 채권단도 손실이 불가피해진다”고 설명했다. 자율협약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루게 되면 채권단은 물론이고 주주나 직원들도 이득인 것은 당연지사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을 자율협약에 넣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업 상황이 극단적으로 나빠지기 전에 채권단과 논의해 대책을 세우는 이른바 ‘상시 구조조정’을 강화하면 자율협약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촉법에 바탕해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워크아웃과 자율협약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 워크아웃과 자율협약의 진행 과정은 거의 유사하다. 선제적 구조조정인 자율협약과 사후적 구조조정인 워크아웃의 유기적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법률에서 두 방식의 근거를 함께 규정하되, 자율협약에 더 큰 유연성을 허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오정근 특임교수는 “모든 구조조정을 법에 옭아맬 필요는 없다”면서도 “자율협약에 들어가는 조건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인력 확보 역시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다. A씨는 “자율협약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과 경영진이 구조조정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개입보다 제도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율협약·워크아웃·법정관리 어떻게 다른가   
  
채권단 주도냐 법원 주도냐 차이   
  
기업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은행 등 채권단은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을 선택한다. 반면 기업이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낮다면 법정관리로 가게 된다.  
  
‘자율협약’은 가장 낮은 단계의 구조조정 협약이다. 기업이 돈을 빌린 금융기관(채권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쓰는 돈을 줄이는 등 자구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과 은행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구조조정을 신청하고, 처방전을 내놓기 때문에 ‘자율’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법정관리를 피했기 때문에 시장 충격과 기업 이미지 훼손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자율협약은 채권단 100%가 찬성해야 한다. 채권단은 채권 만기 연장, 출자전환 등을 하고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조정안을 마련한다.   
  
‘워크아웃’ 역시 채권단이 주도하지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란 법적 구속력이 있다. 구조조정을 채권단이 주도한다는 점은 자율협약과 비슷하지만 채권단 범위가 1금융권(은행)에서 2금융권까지 넓어진다. 이해 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한목소리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채권단 75%가 찬성하면 워크아웃이 시작된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의 경영권은 채권단이 갖는다. 채권단이 결정하면 기업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는 강도가 가장 높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도권은 채권단이 아닌 법원으로 넘어가고, 법원은 법정관리인을 임명해 회사의 경영을 맡긴다. 법정관리 개시가 허락되면 법원은 채무조정을 통해 기업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낮춰준다. 또 기업이 채무 상환 계획을 제대로 지키는지 수시로 검사한다. 기업이 계획대로 빚을 잘 갚으면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된다.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한다면 법원은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